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6 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저출생·고령화, 기대수명 대비 이른 퇴직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신중년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
ㅇ 이에 현행 신중년(50~65세) 지원체계를 중장년(40~65세)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자리 지원대상을 종전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2조)
나. ’세종신중년센터‘의 명칭을 ’세종중장년센터‘로 변경함(안 각 조)
다. 연령조정 시 사유를 사업계획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후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신중년의”를 “중장년의”로, “신중년의 삶”을 “중장년의 삶”으로 한다.

제2조 중 ““신중년”이란”을 ““중장년”이란”으로, “50세”를 “40세”로 한다.

제3조 중 “신중년”을 “중장년”으로, “시책이”를 “시책을 마련하거”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 중 “신중년”을 “중장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중년의”를 “중장년의”로, “신중년 일자리”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장년 일자리”로,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신중년 일자리”를 “중장년 일자리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중년 일자리”를 “제6조에 따른 중장년 일자리”로, “세종신중년센터”를 “세종중장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중년”을 “중장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 및 마케팅”을 “보육, 홍보 및 판로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취업 취약계층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령조정의 사유와 적용 범위를 해당 사업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세종신중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세종중장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세종신중년센터”를 “세종중장년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센터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과 중장년 일자리 관련 상담·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전단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업무”로,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중장년 일자리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중장년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세종신중년센터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종중장년센터로 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세종신중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세종중장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취업기회 확대 등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장년의 ---------- 중장년의 삶----------.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중장년”이란 ---------- 40세 ----------.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중장년 ---------- 시책을 마련하거---------- 노력해야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

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야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중장년의 ---------- 세종특별자치시 중장년 일자리 ---------- 수립·시행해야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신중년 일자리의 기본 방향	1. 중장년 일자리 지원-----
2.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세종신중년센터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중장년 일자리 ---------- 세종중장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 중장년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3. --- 보육, 홍보 및 판로 확대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	③ ---- 제2조에도 불구하고

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사업의 특성, 취업 취약계층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 이 경우 연령조정의 사유와 적용 범위를 해당 사업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제7조(세종신중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신중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세종중장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 ---------- 세종중장년센터----------. ② 센터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과 중장년 일자리 관련 상담·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 및 금액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 ---------- ---------- ---------- ---------- 납부해야 ----. ---------- ---------- ---------- ----------

다.	--.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생 략)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시해야 ------.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업무---------- 중장년 일자리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4. 1. 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

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지원대상을 기존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일자리 상담·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등의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신규 시설 설치나 지원사업의 의무적 확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사업별 지원규모와 참여인원 및 예산편성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 성 규

[붙임 3]

현 행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1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780호, 2025. 7. 14.,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기업지원과), 044-300-4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취업기회 확대 등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중년 일자리의 기본 방향
2.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세종신중년센터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1. 1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3.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5. 전문지식을 활용한 정책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6.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7조(세종신중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신중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 및 금액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을 받아 정한다.<신설, 2022. 11. 14.>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14.]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한다.<신설, 2022. 11. 14.>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7. 14.>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1.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6호, 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종신중년센터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780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